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께

~ 피해자를 위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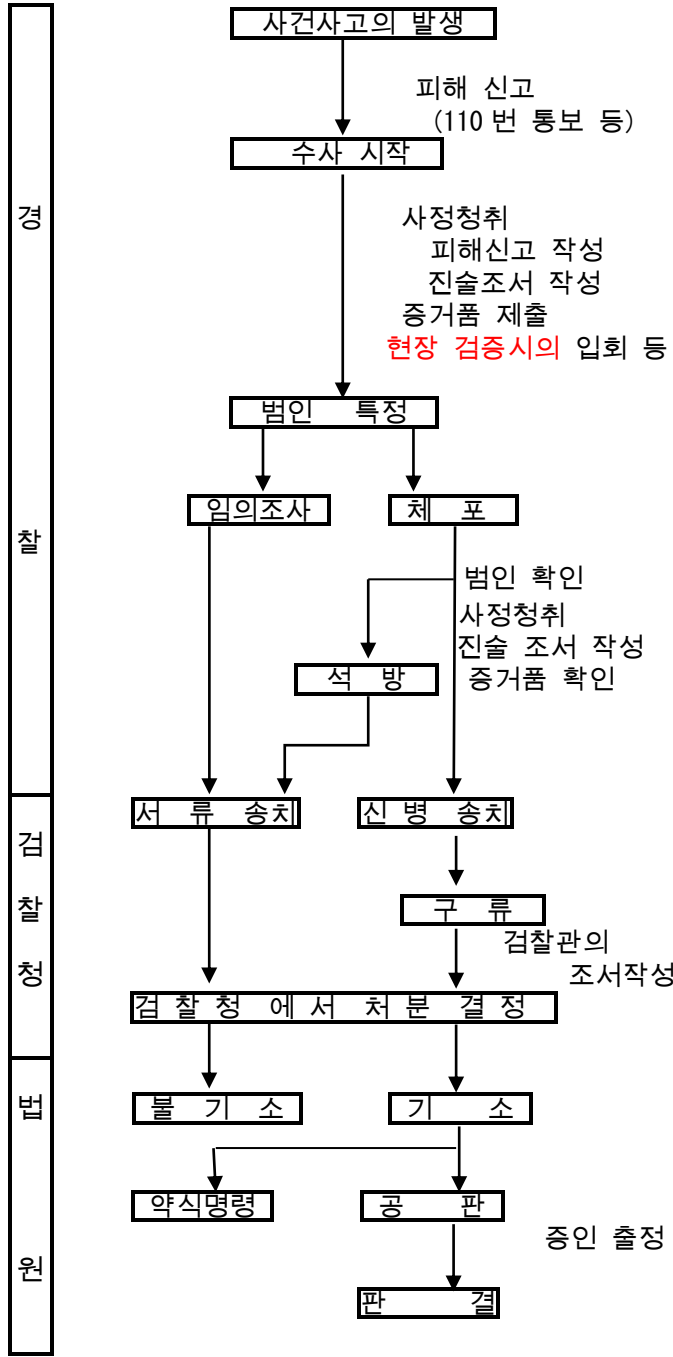
이 안내서는 여러분께

- 수사 및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범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받게 되는지
 - 경찰로부터 어떤 협력을 부탁 받게 되는지
 -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등을 알기 쉽게 알려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시가헌경찰본부

우편번호 520-8501
오쓰시 우치데하마 1-10
전화(대표) 077-522-1231

형사사건 수속절차의 흐름 성인사건



형사사건 수속절차의 개요 성인사건

범인 및 범죄 사실을 밝히고, 부과해야 할 형벌을 결정하는 수속을 형사수속이라 하고, 이것은 크게 「수사」·「기소」·「공판」의 3개의 단계로 나누어, 범인이 성인일 경우와 소년일 경우에 따라 수속이 다릅니다.

• 범인이 성인일 경우

수사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을 밝혀 사건 해결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이 일정한 증거를 근거로 범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경찰은 필요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48시간 이내에, 그 신병을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송치」).

송치를 받은 검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재판관에게 신병구속을 청구하여 (「구류」), 재판관이 이 청구를 인정하면,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구류 됩니다.

한편,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을 경우 등에는, 체포하지 않고 조사하여, 증거를 갖춘 후, 수사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냅니다.

기소

송치를 받은 검찰관은, 구류 기간내에 경찰에서 송치된 서류 및 증거를 정밀히 조사하고, 검찰관 자신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를 「기소」,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를 「불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당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또, 기소에는, 일반 공개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공판청구」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서면심리만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청구」가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사건 송치의 경우에는 송치를 받은 검찰관은, 필요한 수사를 한 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공판

피의자가 기소되면, 공판 개최일이 결정된 후 심리를 통해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에 대해서, 검찰관이나 피고인이 그 내용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 재판소(고등법원 등)에 항소하게 됩니다.

소년사건 수속 절차의 개요

• 범인이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일 경우

수사

경찰에서는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법정형이 징역·금고 등의 비교적 무거운 범죄를 범했을 경우는,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받은 검찰관은, 조사를 한 후 소년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의견을 첨부하여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법정형이 벌금 이하의 범죄를 범했을 경우는, 경찰에서 직접,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심판

가정법원에서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심판」(형사수속에서 말하는 재판)에 넘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속 과정에서, 소년이 충분히 개심하고, 이미 심판을 위해 호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심판에 넘기지 않고, 그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이것을, 「심판 불개시」라고 합니다.)

한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심판수속이 개시됩니다. 심판에서는, 「보호 처분」(소년을 시설내에 수용하고, 교정교육을 하는 소년원 송치 및 사회에서의 보호관찰관과 보호사가 협력하여 소년의 개선 강생을 도모하는 보호관찰 등)을 결정하고,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한편, 소년이 흉악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 등, 형사처분을 해야 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소년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형벌에 처할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받습니다.

*소년범죄에 의한 피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소년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 범죄피해자 등의 소년심판의 방청
- 피해자 등에 대한 심판상황 설명
- 심판 결과 등 통지

• 범인이 14세 미만의 소년일 경우

조사 등

경찰에서는 14세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아동상담소에 송치 또는 통고합니다.

아동상담소에서의 조치

송치 또는 통고를 받은 아동상담소는, 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조치(아동자립 지원시설에 입소 또는 수양부모에게 위탁 등)을 하고, 사안을 종료시키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사안을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은 14세 이상과 동일하게 심판을 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수사협력에 대한 부탁

여러분께는 형사수속상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여 부담을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범인을 잡아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사정청취

범행의 상황 및 범인의 모습 등에 대해 사정청취를 합니다.

• 증거품의 제출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가지고 있었던 물건 등은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품으로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장 확인을 위한 입회

범죄 현장 등을 확인할 때에 입회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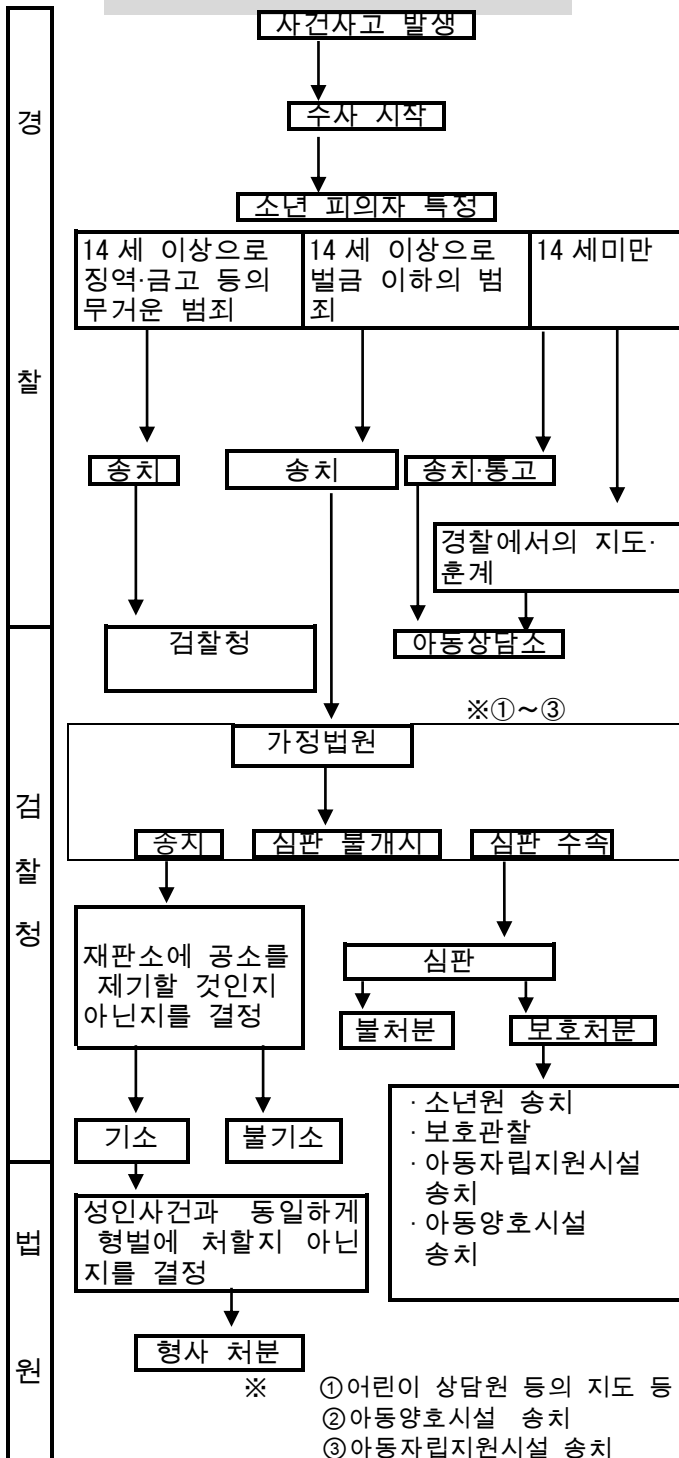
• 검찰관의 사정청취

기소·불기소의 판단을 위해서, 검찰관으로부터 같은 질문이 되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판에서의 증언

공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사건 수속 절차의 흐름



※ ①어린이 상담원 등의 지도 등
②아동양호시설 송치
③아동자립지원시설 송치

범죄피해급부제도

범죄피해 급부제도는, 고의의 범죄행위(살인 및 상해 등)에 의해 가족을 잃은 유족, 중상을 입은 피해자 및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의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을 경과했을 때,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쪽에도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급부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의 상담창구 또는 경찰본부 범죄피해지원실에 문의해 주세요.

범죄피해 급부제도의 개요

종류	수급자의 자격·순위
유족급부금	유족 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손자⑤조부모⑥형제자매의 순으로 제1순위 유족)에게 지급
중상병급부금	치료 1개월 이상 동시에 입원 3일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상병(정신질환의 경우는 치료 1개월 이상 동시에, 3일 이상 노무에 복무할 수 없을 경우)을 입은 분에게 3년간을 한도로 보험진료에 의한 의료비의 자기부담과 휴업손해를 고려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상한 120만엔)을 지급
장해급부금	장해등급 1급~14급의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

경제적 지원 제도

종류	지급기준	내용
진단서료 등	신체범죄의 피해자로 수사상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료 초진료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초진료 등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상 의사의 진찰 등이 필요한 경우	초진과 관련된 제비용, 검사 등 비용, 재진료, 긴급 피임 조치료, 인공임신중절 비용
여비	현장확인, 사정청취 등을 위해 경찰서 등에 출두 요구를 받았을 경우	자택에서 경찰서 등까지의 교통비
범죄피해자 등 카운셀링 경비	범죄피해자 등이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의 진찰 및 카운셀링이 필요할 경우	진찰료 카운셀링 경비
경찰서 이외의 상담시설 경비	성범죄 및 폭력단 범죄, 뺑소니 사건 등의 피해자로, 경찰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피해상담·사정청취 등을 요청 받았을 경우	시설 이용료
일시 피난장소 확보를 위한 경비	범죄피해자 등으로, 스스로 숙박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긴급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일시적인 피난 조치로서 이용한 시설의 숙박비
하우스 클리닝비용	자택 등이 범죄피해로 인해 혈흔 등으로 오손되어, 청소가 필요한 경우	청소작업(혈흔, 토사물, 배설물, 악취 등의 제거 등)에 필요한 경비
사법해부 후의 사체 반송 경비	범죄피해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법해부를 한 사체로 유족이 반송을 희망할 경우	시가의과대학에서 시가현내의 자택 또는 요청된 장소까지의 반송비

※공비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및 공비부담의 상한이 있습니다.

민간 피해지원단체에 의한 피해지원

시가현 공안위원회지정 범죄피해자 등 조기지원단체

공익사단법인 오미범죄피해지원센터
살인, 강도, 성 피해 등의 범죄, 스토크나 DV 등의 범죄 행위, 교통사고·사건 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관계자 여러분의 정신적인 케어를 돕습니다. 비밀은 엄수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우선은, 익명으로 관찮으므로 문의해 주세요.

077-521-8341 (범죄피해자 서포트 텔레폰)

077-525-8103 월~금요일 10:00~16:00

(토·일·공휴일·연말 연시를 제외)

0570-783-554 일본국내 공통전화번호

상기 077-525-8103 이 통화중 또는 접수시간 이외(토·일·공휴일을 포함한 오전 7시 30분~오후 10시 사이: 연말 연시를 제외)는 범죄피해자 등 전화지원센터의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피해자 연락제도

경찰에서는 살인, 강제추행 등의 범죄, 상해 등의 신체범죄, 뺑소니 사건, 위험운전치사상 범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 교통사망 사고 등의 피해자 여러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시 적절하게 연락하는 피해자 연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형사수속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피해자로부터 사정청취를 한 조사원이, 형사수속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 연락합니다.

● 수사 상황

범인이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연락합니다.

● 범인의 체포

범인을 체포했을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범인이 체포된 것과 범인의 성명, 연령 등에 대해서 연락합니다.

● 범인의 처분 상황

체포후 구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기소·불기소 등의 처분결과, 공소를 제기한 법원 등에 대해서 연락합니다.

※범인이 소년의 경우에는, 연락 내용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확보에 관한 제도

● 재피해의 방지·보호 대책

「재피해방지 대상자」... 피해자가, 거듭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경계 조치를 취합니다.

「보호 대상자」... 가해자가 폭력배, 폭력단 관계자 등으로, 복수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서 지정하고, 피해의 미연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나 폭력단 등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에게 통보해 주세요.

● DV(배우자의 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 보호

DV 사안 및 아동학대, 스토크 사안 등의 피해를 입은 분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 확보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구제 제도

제도	제도내용	담당 관청 등
법원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증인의 차폐, 피해자의 의견진술, 증인과 동참, 공판기록의 열람, 증거품의 반환 등을 도와드립니다.	오쓰지방검찰청 077-522-4671
피해자참가 제도	살인·상해 등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상시킨 범죄, 과실운전치사상 등의 피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참가인이라는 소송 절차 수속상의 지위를 얻은 후,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에 따르는 여비 등의 지급제도도 있습니다.	오쓰지방법원 077-522-4281
손해배상명령 제도	살인·상해 등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상시킨 범죄의 피해자 등은, 형사재판소에 대해 기소 후,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형사수속 성과를 이용하면서 간단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가변호사회 077-522-3238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제도	피해를 입으신 분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수속과는 달리 피해자 등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쓰보호관찰소 077-524-6683
강생보호에 관한 제도	강생보호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여러분을 위한 제도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소에 문의해 주세요. ○의견 등의 청취 제도 ○심정 등 전달 제도 ○가해자에 관한 정보의 통지 ○상담·지원	오쓰보호관찰소 077-524-6683
공영주택에 우선입주 제도	범죄로 인해 종래의 주택에 살 수 없게 된 피해자는, 공영주택에 우선 입주자의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현영주택관리센터 077-510-1500 시정촌 담당과
장학금제도	범죄피해자의 자녀분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기 곤란한 분은, 장학금(학용품비)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죄피해구원기금 03-5226-1021
범죄피해자 등지원조례	시가현에서는 피해자등에 대한 위문금 지급을 규정하여 피해자등지원조례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시정에 따라 다릅니다. ○유족위문금(30만엔) ○상해위문금(3~20만엔)	살고계시는 지역의 담당과

피해자 카운셀링 제도

피해를 입으면, 사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 사건이 상기되어 잠을 자지 못 한다든지, 다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심신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피해자라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병이 아닙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로 회복됩니다.

경찰에서는, 범죄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이나 그 가족 여러분의 정신적인 도움이 되도록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 카운셀러에 의한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의 상담창구 또는 경찰본부 범죄피해지원실에 문의해 주세요.

성폭력 피해자 종합케어 원 스톱 비와코

「Sexual Assault victim Total Care One stop BIWAKO」 통칭 SATOCO (사토코)

SATOCO는, 성폭력피해자의 종합적인 케어에 원 스톱 대응을 위한, 공익사단법인 오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시가현 산과산부인과 의사회의 추천 의료기관(미나미쿠사쓰 노무라병원, 진노 레이디스 클리닉), 시가현경찰, 시가현의 협력 체제입니다.

● SATOCO가 제공 가능한 지원

○몸과 마음의 종합 케어

주로 성폭력을 당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케어입니다.

여성상담원과 간호사, 그리고 의사가 안전하고 협력적인 환경 하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종합적인 케어를 합니다.



24시간 핫라인

090-2599-3105

또는 #8891

satoco3105biwako@gmail.com

여성상담원·간호사가 상담합니다.

상담창구

담당기관	내용
범죄피해자 서포트 텔레폰 TEL 077-521-8341	범죄피해에 관한 상담, 관련기관·단체 소개 등
범죄피해자 종합창구 TEL 077-525-8103 TEL 0570-783-554	범죄 피해자의 상담, 창구 소개
현민의 목소리 110번 TEL 077-525-0110 (푸쉬 회선은 #9110)	범죄에 의한 피해의 미연방지 및 경찰전반에 관한 상담
성범죄피해상담전화 TEL 077-522-1551 (푸쉬 회선은 #8103) 무료상담전화는 0120-167110	성범죄에 관한 상담 (24시간 접수)
일본사법지원센터(호테라스) 범죄피해자 지원전화 TEL 0570-079714	법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및 법률 서비스의 제공
오쓰지방검찰청 피해자 핫라인 TEL 077-527-5149	피해상담 및 사건에 관한 문의
오쓰 소년지원센터 TEL 077-521-5735 마이바라 소년지원센터 TEL 0749-52-0114	가정 및 친구, 왕따 등의 청소년에 관한 상담
폭력단 추방 핫라인 TEL 077-527-2140	폭력단에 관한 상담
시가현 폭력단 추방 추진센터 TEL 077-525-8930	폭력단과의 트러블에 대한 지원 및 조언
시가현 남녀공동합의센터 TEL 0748-37-8739	DV, 성희롱 등에 관한 상담
시가현 주오 어린이가정상담센터 TEL 077-562-1121	아동·여성에 관한 상담
시가현 히코네 어린이 가정상담센터 TEL 0749-24-3741	
시가현 오쓰 다카시마 어린이 가정상담센터 TEL 077-548-7768	

의문점 등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주세요.

(담당 조사원)

시가현

경찰서·대

전화번호

과·담당자